

**[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]  
기업 규제개선(법률자문) 지원 공고**

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11. 25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
(재)강원테크노파크 원장

I

**지원개요**

- (목적)**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, 실증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· 법률 애로를 해소하고 법률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함
  - \* 지원근거: 지역특구법 제97조(재정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- (지원기간)** 2025. 11. 25. ~ 2025. 12. 20.
  - 상기 기간 내 법률자문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일체의 지원 완료
- (지원규모)** 3개사
  -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  - 접수 순서 및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 등에 따라 3개사 선착순 선정
- (지원대상)**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\*

- ▶ **지원제외 :** 기타부도, 휴폐업,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, 파산·회생 기업, 자본전액잠식, 부채 1,000%이상, 국가R&D 참여제한 기업(대표자) 등
- 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가능

\*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-75호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

## II

## 지원내용

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

구분	내 용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증특례 관련성 검토: 실증특례 적용 가능성·범위·한계 판단 등</li> <li>■ 사업화시 법령 접촉성 진단: 제품/서비스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 (의료·의료기기·바이오, 개인정보/의료데이터 등)</li> <li>■ 기타 AI 헬스케어 관련 규제·법령 및 사업화 이슈 자문</li> <li>■ 산출물: 법률자문 결과보고서</li> </ul>
지원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강원TP-협약 법무법인을 통한 연계(현금지원 없음)</li> <li>■ 절차: 자문내용 접수 → 자료검토 → 법률자문 → 의견서(초안) → 보완 및 최종결과보고서 산출</li> </ul>

## III

## 지원절차



※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IV

##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5. 11. 25. ~ 모집완료 시까지  
 - 지원기업 3개사 선착순 선정 완료 시 접수 마감
- (신청방법) 담당자 E-mail로 제출서류 송부
- (접수 및 문의처)

접수처	(재)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규제혁신팀		
구분	담당자	전화	이메일
(재)강원테크노파크	서혜담 대리	033-248-8645	hds@gwtp.or.kr

- (제출서류)

연번	제 출 서 류	비고
1	【서식 제1호】 신청서	
2	【서식 제3호】 개인(기업)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
3	【서식 제4호】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
4	【서식 제5호】 청렴서약서	
5	사업자등록증, 실증특례확인서	
6	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	
7	국세 납세증명서 ※ 국세청 홈택스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에서 발급	비영리기관 제외가능
8	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민원24( <a href="http://minwon.go.kr">minwon.go.kr</a> )에서 발급	

\*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

(선정방법)

-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요건 · 서류구비 여부 등 1차 검토
- 1차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접수순으로 법무법인 사전검토 의뢰
-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규모(3개사)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최종선정

 (결과안내)

- 선정결과는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한 개별 통보
-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, 법률자문 불요 또는 부적정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미선정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개별 안내
-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일정, 세부 진행방식 등을 별도 안내 예정

 (유의사항)

-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사업자가 아닌 경우 선정에서 제외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
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

**별첨****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기준**

구 분	사 전 지 원 제 외	사 후 관 리
검토 기준	<p>1. 기업의 부도</p> <p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4.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p> <p>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기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신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</p> <p>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미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p>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p>	<p>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</p> <p>1.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 2.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 3. 부분자본잠식 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 5.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"한정"</p>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의 경우 "사전지원제외 대상"으로 처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"사후관리 대상"에 해당됨을 보고</li> <li>○ 연구개발기관이 "사후관리대상"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,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도점검 등 결과 "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"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